

# 예비당첨자 서류제출 안내문(신혼부부 특별공급)

## ■ ‘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’ 예비당첨자 서류 제출 안내

- 장소 :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 견본주택

- 대상자 : 일정 안내 참조

- 제출 기간 : 별도 안내

※ 서류 접수 진행은 별도 안내자만 접수 가능합니다.

구분	제출 서류	내용
필수서류	주민등록표등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요망
	주민등록표초본	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발급요망
	가족관계증명서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로 발급 ※ 미혼, 이혼, 사별, 단독세대,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
	혼인관계증명서	혼인신고일 확인,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
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(발급처:국민건강보험공단) ※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
	소득증빙 서류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세대의 소득입증 서류)
	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발급분에 한함.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에 '아파트 계약용'으로 직접 기재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,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
	신분증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)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)
해당자	출입국사실증명서	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※ 발급기간 :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3.31) (행정복지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)
	주민등록표등본	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 발급 시 "상세"로 발급 요망)
	출입국사실증명서	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수로 산정한 경우 :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기간 지정 발급 ※발급기간 : 본인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3.31)
	복무확인서	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
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 제출 ※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함
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입양의 경우
제 3자 대리인 계약시 (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)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	비사업자 확인각서	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
	위임장	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(당사 견본주택 비치)
제 3자 대리인 계약시 (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)	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 및 인감도장	용도 : 아파트 위임용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), 단,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신분증 및 인장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)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)

※ 인감도장은 정당계약 시 필히 지참 바랍니다.(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외)

※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3월31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

※ 모든 서류는 세대원 전부 포함하여 주민번호 뒷자리 다 나오게 발급

# 서류제출 안내문(소득입증 제출서류)

해당자격	소득입증 제출서류	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-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, 재직증명서 [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'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' 으로 발급)]	- 해당직장 - 세무서
	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	-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-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	-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- 재직증명서,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(원본, 직인날인)	-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-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-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 명세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	-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-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, 사업자등록증(사본)	-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-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※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(원본) 제출	- 세무서
	신규사업자	-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- 사업자등록증	- 국민연금관리공단 - 세무서
	법인사업자	-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-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	- 세무서 - 등기소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-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-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	- 세무서 - 해당직장	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- 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-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(직인 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-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) 또는 월별급여명세표, 근로계약서	- 해당직장 - 국민연금관리공단	
무직자	- 비사업자 확인각서(건본주택에 비치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.	- 건본주택	

※ 기타 본 안내문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'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' [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.12.11.]에 따름